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○ 소음·진동규제법이 개정(2002.12.30, 법률 제6845호)됨에 따라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사무의 집행에 관한 수수료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

○ 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여 관련업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○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관련 수수료 신설

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: 1건당 10,000원

- 소음·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: 1건당 5,000원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소음·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,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권한이 법률 제6845호(2002.12.30)로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,

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던 관련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개정된 소음·진동규제법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월(2003. 7월부터 시행)로 하고,

제2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「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어,

사실상 법 시행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

법 시행일 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와

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